

# 사 단 법 인 서 울 특 별 시 미 술 관 협 의 회

A.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2F / E. seoul.scm@gmail.com / T. 02-6367-7070

##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

- 일 시 :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11:00 ~ 13: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 강의실1(스퀘어홀)
- 대 상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회원관 관장, 실무자

### I. 정기총회 의사일정

- 개회선언 및 성원보고
- 인사말

### II. 2023년도 보고

1. 2023년 운영
2. 2023년 결산 및 감사보고 ..... ( ~ 2023. 12. 31.)
3. 2023년 20주년, 30주년 미술관 공로패 전달

### III. 2024년 운영계획 및 예산(안)

### IV. 논의안건

번호	안건	비고
논의 안건 1호	(사)서미협 및 사무국 운영 방안 논의	
논의 안건 2호	서울시 박물관과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사업 방향 설정	
논의 안건 3호	(사)서미협 및 회원관 법률자문 운영 여부	
논의 안건 4호	2024년 (사)서미협 추진 사업 검토	
논의 안건 5호	위원회 및 역할 구성	

### □ 부 록

1.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현황
2.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정관

## II. 2023년도 보고

### [1. 2023년 운영]

#### (1) 총회&이사회 운영

##### 1) 제6차 정기총회

- 일시/장소 : 2023. 01. 30. (월) 13:00 - 15:00 / 헬로우뮤지움
- 안건 : 2022년 운영보고 및 2023년 계획안 수립 등

##### 2) 제12차 이사회

- 일시/장소 : 2023. 10. 05. (목) 13:30 - 16:30 / 코리아나미술관
- 안건 : 서울시 박물관과 문화사업, 인력지원 사업 운영 현황 검토  
협의회 내부 운영 및 자금 조달 방법 논의, 서울시 박물관과 등 협업 관계 모색 준비 등

##### 3) 회장단 회의 소집 및 내부감사 실시

- 일시/장소 : 2023. 10. 13. (금) 16:00 - 19:00 / 헬로우뮤지움 성동안심상가 4F 회의실
- 안건 : 사무국 및 보조금 사업 운영 방안 논의 및 내부감사 실시

##### 4) 2023년 이사회, 임시총회

- 일시/장소 : 2023. 11. 07. (화) 14:00 / 헬로우뮤지움 성동안심상가 8F 대회의실
- 안건 : 23년 운영 보고 및 내부감사 결과 공유, 위원회 구성 등

## (2) 2023년 사업보고

### 1) 서울시 박물관과 - 미술관 활성화사업 - <(사)서미협 사진·영상 콘텐츠 지원> (2023.04 - 2023.12)

- 협의회 회원관에서 진행하는 전사교육 기타 행사에 대하여 양질의 사진 및 영상 콘텐츠를 지원 (2019 ~ 2023)
- 협의회 회원관의 활동양상을 아카이브하여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문화정보 제공
- 사진·영상 콘텐츠 지원을 통한 홍보, 도록 및 브로셔 제작, 기타 콘텐츠 제작 등의 다양한 실무로 연장
- 사업비: 총 2,730만원 (보조금 2,600만원 + 자부담 130만원)

참여기관 및 내역 (다음 페이지)

### 2) 서울시 박물관과 - 미술관 활성화사업 - 인력지원 (2023.04 - 2024.01)

- 10개월 간 인력지원금 지원, 실무자 1인
- 사업비: 총 2,500만원 (보조금 2,200만원 + 자부담 300만)

### 3) 서울시50+재단 - 보람일자리: 문화시설지원단 (2021 ~ 2024(예정))

- 50+ 세대에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안정된 인생 후반기 지원하는 사업
- (사)서미협, (사)서박협이 허브 역할로 문화시설지원단 참여기관을 모집, 인력 파견
- 참여기관: 사비나미술관, 서울대미술관, 성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일민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7)

### 4) 서울시 박물관 x (사)서미협 회장단 미팅

- 2023.10.18.(수) 14:00, 서울시청 서울시 박물관과
- 참석자: 협의회장 김이삭 관장, 부회장 김보라 관장, 서울시 박물관과 배희정 과장, 서울시 박물관정책과 노은영 팀장
- 박물관과 신임 과장 인사,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소개, 서울시 박물관과 사업 제안사항 모색

### 5) 양천구청 『파리공원 및 오목공원 내 여가시설 운영 용역』 입찰 투찰

공고: 2024. 01. 18 용역입찰 공고 상신(긴급)

입찰 준비를 위한 인력 투입: 고윤정 큐레이터(1인) 2024.01.22. - 2024.02.21. (1개월)

입찰서 제출 및 나라장터 지문투찰: 2024.01.30.-31.

경쟁 PT: 2024. 02. 14.

결과 공고: 2024. 02. 16. (낙)

지출비용: 총 2,975,860원 (기업신평가 269,500원, 제안서 인쇄비 206,360원, 인건비 1개월 2,500,000원(예정))

◦ 2023 (사)서미협 사진·영상 콘텐츠 지원사업 신청 및 제작 내역

순서	분류	미술관명	콘텐츠내용	제작여부
1	영상	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 《자아(自我) 아래 기억, 자아(自我) 위 꿈》 아카이브	○
2	영상	(재)한원미술관	전시 《물, 길》 아카이브	○
3	사진		전시 《물, 길》 아카이브	○
4	사진	아트센터나비	전시 《Cabinet of the Ephemeral - Collecting Media Art (일시적인 것의 방 - 컬렉팅 미디어 아트)》 아카이브	○
5	사진			○
6	영상			○
7	영상	코리아나미술관	후니다 킴 작가 퍼포먼스 인터뷰 및 퍼포먼스 전경	○
8	영상		김보경 작가 퍼포먼스 인터뷰 및 퍼포먼스 전경	○
9	영상		전시 《Step X Step》 아카이브	○
10	영상	성북구립미술관	전시 《화가의 벗, 시대공감》 도슨트	○
11	사진	일민미술관	전시 이시우드 개인전 《I Like To Watch》 아카이브	○
12	사진			○
13	사진	세화미술관	전시 《귀맞춤》 아카이브	○
14	영상	아트선재센터	〈도슨트 학교〉 프로그램 소개	○
15				○
16	사진	사비나미술관	초남 이흥진 작가 정원수 조각 프로젝트 전시 아카이브	○
17	영상		초남 이흥진 작가 정원수 조각 프로젝트 인터뷰	○
18	영상		고명근 《투명한 공간, 사이 거닐기》 작가 인터뷰	○
19	사진	헬로우유지움	전시 《My Turtle》 오픈행 행사 스케치	○
20	사진		전시 《My Turtle》 전시 아카이브	○
21	사진		전시 《My Turtle》 아트동동 프로그램 스케치	○
22	사진	성곡미술관	김옥선 《평평한 것들》 전시 아카이브	○
23	영상		김옥선 《평평한 것들》 작가 인터뷰	○
24	사진	자하미술관	전시 《신/여성의 탄생》 전시 아카이브	○
25	사진		전시 《신/여성의 탄생》 전시 아카이브	○
26	영상	성북구립미술관	최만린미술관 하반기 전시 아카이브	○
27	영상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하반기 전시 아카이브	○
28	사진	일민미술관	미술관 리뉴얼 - 기동서점 아카이브	○
29	사진	세화미술관	아티스트 토크 프로그램 스케치 -> 해머링맨 등 작품 아카이브 사진 촬영	○
30	사진	아트선재센터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 수어해설 프로그램 스케치 -> 타렉 아투이 《The Rain》 어린이 도슨트 스케치	○
31	사진	토탈미술관	토탈미술관 메타버스 스테이션 소개 -> 메타버스에서 예술하기 프로그램 현장 스케치 사진 촬영	○
32	영상		토탈미술관 메타버스 스테이션 소개 -> 메타버스에서 예술하기 프로그램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
33	사진	OCI미술관	김정욱 개인전 아카이브	○
34	사진			○
35	영상			○

## [2. 2023년 결산]

(1) 2023년 수지계산서 (결산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수 지 계 산 서

제 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6 기 2022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과 목	제 7(당) 기		제 6(전) 기	
	금	액	금	액
<b>수 입</b>		<b>25,183,791</b>		<b>89,901,152</b>
1. 이 월 잔 액	(16,237,801)		(30,012,091)	
전기말 법인계좌 잔액	16,237,801		30,012,091	
2. 기 금 / 보 조 금 사 업	(0)		(49,000,000)	
사진 영상 콘텐츠 지원		시스템: 26,000,000	30,000,000	
준학예인력지원		시스템: 22,000,000	19,000,000	
3. 회 원 수 입 금	(4,500,000)		(5,000,000)	
입, 연회비	4,000,000		5,000,000	
이사회비, 발전기금	500,000		0	
4. 기 타 수 입 금	(4,445,990)		(5,889,061)	
4대보험료 / 세금 원천징수	4,435,000		5,863,425	
이자수입	10,990		25,636	
출연금이자	0		0	
<b>지 출</b>		<b>22,573,808</b>		<b>73,510,422</b>
1. 사 무 국 운 영 비	(10,606,910)		(22,610,422)	
(1) 인 건 비	(6,606,910)		(2,660,784)	
인건비	6,606,910		2,660,784	
(2) 자 체 사 업 비	(4,000,000)		(6,800,000)	
사진 영상 콘텐츠 지원	1,300,000		1,500,000	
준학예인력지원	2,700,000		5,300,000	
(3) 기 타 경 상 비	(11,966,898)		(13,149,638)	
4대보험료	5,759,080		4,908,500	
세금	2,913,410		4,953,430	
유지비	1,519,508		3,015,708	
운영비, 식대 등	124,900		272,000	
정기법률자문	1,650,000			
2. 기 금 사 업 비	(0)		(50,900,000)	
사진 영상 콘텐츠 지원		예정: 26,000,000	30,000,000	
준학예인력지원		예정: 22,000,000	20,900,000	
보조금 반납액	0		0	
<b>차 기 이 월 금</b>		<b>2,609,983</b>		<b>16,390,730</b>
-법인통장 예금잔고 (당기말 현재)	2,609,983		16,237,801	
<b>차 기 이 월 수 지 차 감 액</b>		<b>-</b>		<b>152,929</b>

(2) 협의회 년도 말일자 통장잔액 (2019년말 ~ 2023년말)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년도별 통장 잔액 집계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b01	신한	438844	-	-	-	-	-	300,983
b02	신한	438900	-	-	-	-	-	718
b03	우리	211254	803,325	852,201	3,939	1,904,860	183	-
b04	우리	211262	13,006,278	6,929	9,025	1	3,077	-
b05	우리	276636	-	5,532	6,566	1	6,273	-
b06	하나	20504	41,345,611	31,099,349	21,380,986	27,202,954	16,222,889	2,199,797
b07	하나	55105	151,057	141,123	1,263	901,759	2,212	2,218
b08	하나	62311	-	-	-	-	-	-
b09	하나	80804	-	-	-	-	651	103,751
b10	하나	89204	17,550,753	2,516	2,516	2,516	2,516	2,516
			72,857,024	32,107,650	21,404,295	30,012,091	16,237,801	2,609,983

\*출연금 통장은 별도 관리, 현재 잔액: 26,565,561 (2023.01.11.)

- \* 2016년 (사)서미협 설립 시, 협의회 기초자산(출연금): 25,000,000원  
차액 1,565,561원은 24년 1월 운영비 통장으로 송금

24. 2. 27. 오전 12:11

biz.kebhana.com/sw/ea/syprint/hana/viewer.html



조회일시 : 2024-02-27 00:11:14

입출금

[별칭] 계좌명	계좌번호	신규일	최종거래/만기일	잔액
[운영비, 회비] 기업자유예금	145-910012-20504	2017-01-13	2024-02-27	12,681,328 원
<b>거래중지</b> [2018우이신설] 기업자유예금	145-910014-89204	2018-05-03	2019-05-13	2,516 원
[2022문화사업] 기업자유예금	283-890016-80804 (630-010475-345)	2016-04-27	2024-02-27	103,751 원
[2022인력지원] 보통예금	145-910007-55105	2017-08-01	2022-12-21	2,219 원
합계금액				12,789,814 원

- \* 현재 통장 잔액 (2024.02.27.)

##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입회비/연회비 납부 현황

직위	미술관명	입회비	16년 연회비	17년 연회비	18년 연회비	19년 연회비	20년 연회비	21년 연회비	22년 연회비	23년 연회비	24년 연회비	비고
고문	서울시립미술관	-	-	-	-	-	-	-	-	-	-	
	토탈미술관	○	○	○	○	○	○	○	○	○	○	이전 발전기금: 13,000,000원 24년 발전기금: 1,000,000원
회장	헬로우뮤지움	○	○	○	○	○	○	○	○	○	○	이전 발전기금: 100,000원 24년 발전기금: 1,000,000원
부회장	코리아나미술관	○	○	○	○	○	○	○	○	○	○	24년 발전기금: 1,000,000원
	성북구립미술관	○		○	○	○	○	○	○	○	○	
이사	OCI미술관	○	○	○	○	○	○	○	○	○	○	
	아트선재센터	○	○	○	○	○		○	○	○		
감사	세화미술관	○				○	○	○	○	○	○	
	서울대미술관 MOA	○		○	○	○	○	○	○	○	○	
회원관	경재정선미술관	○	○	○	○							
	롯데뮤지엄	○							○	○	○	
	사비나미술관	○	○	○	○	○		○	○	○	○	
	삼성미술관 Leeum	○	○	○	○	○		○	○	○	○	
	상원미술관	○		○	○	○	○	○	○	○		
	성곡미술관	○	○	○	○	○	○	○	○	○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	○	○	○	○	○	○	○	○	
	아트센터 나비	○	○	○	○	○	○	○	○	○	○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	○	○	○	○						
	일민미술관	○	○	○	○	○		○	○	○	○	
	자하미술관	○	○	○	○	○	○	○	○	○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		○		○		○	○	○	○	
	한미사진미술관	○	○	○	○	○		○	○	○	○	이전 발전기금: 10,000,000
	(재)한원미술관	○	○	○	○	○		○	○	○		
환기미술관		○										

### 회비 납부 안내


입회비&연회비를 미납한 회원관은 회비를 납부해주시시오.


- 회원 연회비 : 400,000원
- 납부계좌 : KEB하나은행 145-910012-20504

예금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 2023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감사보고

본 감사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의 2023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명세서를 감사한 결과 2023년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가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 세화미술관 서혜옥 

감사 서울대학교 미술관 심상용 (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장 귀하



## 2023년 20주년, 30주년 미술관 공로패 전달식

(재)한원미술관(1993.12.16.) 하승연 관장: 30주년

코리아나미술관(2003.11.20.) 유승희 관장: 20주년

상원미술관(2003. 09. 23.) 남영우 관장: 20주년

귀하께서는 예술을 향한 숭고한 사명감으로 미술관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국내 예술 및 미술관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미술관 설립 20주년, 30주년을 기념하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27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김이삭 협의회장

## II. 2024년 운영계획(안)

### 1. 서울시 박물관과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사업 - 문화사업

- 24년 신규 신청 예정 (3, 4월 경), 사업 내용은 <V. 논의 안건>에서 검토

### 2. 서울시 박물관과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사업 - 인력지원사업

- 24년 신규 신청 예정 (3, 4월 경)

### 3. 서울시50+재단 - 보람일자리 - 2024 50+문화시설지원단

- 활동인원/기간: 만50~67세 서울시민 중 80명 내외 / 2023년 4월 ~ 11월 (7개월)
- 5개관 수요조사 접수 (서울대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성곡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코리아나미술관)

### 4. 기타 각종 예술단체 지원사업 계획 검토, 협업 기관과의 정보 공유&사업 추진

- 서울시 박물관과,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등 서울시의 산하 및 관련 기관과 협업 및 공조하여 문화예술사업 진행 검토

### 5. 라운드테이블

- 라운드테이블 주제(안): 인클루시브 뮤지엄, 포용하는 미술관
- 2024년 진행여부, 박물관과 외 타 부처 지원 가능여부 확인

### 6. 협의회 위상 재고 - 유관기관 MOU 체결

- 한국박물관협회 내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입지 구축
- 백상경제연구원, 서울변호사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력 MOU 체결
- 한국화랑협회(KIAF, 화랑미술제), FREEZE SEOUL 등 서울시 내 문화예술 행사 협력

### Ⅲ. 2024년 예산(안)

#### 1. 수입

항목	내용	금액
회비	2024년도 연회비	8,800,000
출연금 이자수입		1,500,000
기타 사업비	기타 사업이윤	-
발전기금 조성	회장단 등 3개관 (현재)	3,000,000
<b>합계</b>		<b>13,300,000</b>

\* 수입 증대방안 모색 필요

#### 2. 지출 (대략 금액으로 산출)

항목	내용	금액
웹페이지 등 관리	웹페이지 서버+도메인, 공인인증서, 인터넷전화 등	1,000,000
회계감사비	1년	770,000
공과금	세금, 수수료 등	1,000,000
4대보험료	1인	4,000,000
인건비	1인 (입찰준비 등, 24년 1-2월, 1개월)	2,500,000
입찰 준비 관련	기업신용평가, 제안서 출력 및 제본 등	500,000
사업비 자부담	[미정] 미술관 활성화사업 자부담 5%	1,500,000
학예인력 자부담	[미정] 학예인력 지원 (10개월 기준)	3,000,000
<b>합계</b>		<b>14,270,000</b>

※ 위 수입 및 지출내역은 기본 내역금으로, 추가 사업 및 활동에 따라 항목이 추가될 수 있음

\* 사무국 인력(정호섭) 4대보험 가입 기간: 2019.04.15. - 2024.01.31.

약 3년 9개월 4대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내역 발생

-> 발전기금 12,000,000원 조성(납부) 후 퇴직금 11,752,424원 수령

## V. 논의 안건

번호	안건	비고
논의 안건 1호	(사)서미협 및 사무국 운영 방안 논의	

- 협의회와 건강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 및 사무국 발전 방안 논의
- 발전기금 내규 작성본 (법률, 회계자문 완료) 검토 및 승인
- 2024년 01월 이후 (사)서미협 사무국 신규 사무국장 선임(안)

2024.01.18. 사무국장 모집 공고 게시 ( ~ 2024.01.31.)

2024.02.06. 1차 서류 검토 후 면접 (4인, 전원 부적격)

번호	안건	비고
논의 안건 2호	서울시 박물관과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사업> 사업 방향 설정	

- 서울시 박물관과 문화사업 지속 참여, <(사)서미협 사진·영상 콘텐츠 지원> 외 다른 형태의 사업 구성

### <도슨트 학교>

참여자들을 모집, 각 미술관들의 관장 혹은 실무자에게 미술관별 특성과 전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슨트 양성에 초점을 둔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

번호	안건	비고
논의 안건 3호	(사)서미협 및 회원관 법률자문 운영 여부 (2023.10.15. - 2024.01.14.)	

- (사)서미협 및 회원관의 정기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2023.10.15. - 2024.01.14. , 3개월)

**법률 자문 내용:**

- (사)서미협 회원관 법률자문 및 작성
- 계약서 작성 및 내규 검토
- 보조금 및 지원금 관련 검토 등

**운영 기간:**

- 2023. 10. 15. - 2024. 01. 14. (3개월)

**참여 회원관:**

- 헬로우뮤지움, (재)한원미술관

**향후 지속 운영 여부:**

번호	안건	비고
논의 안건 4호	2024년 (사)서미협 추진 사업 검토	

- 자체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심포지움, 도슨트 학교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등

- 협력: 미술주간, 서울아트워크, FREEZE 2024 등

- 입찰 및 타부처 보조금 사업 등

번호	안건	비고
논의 안건 5호	위원회 및 역할 구성	

\* (사)서미협 발전을 위한 심화업무 수행 (2023. 11. 07. 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 세화미술관 서혜옥 관장

정책위원회: 자하미술관 강종권 관장

대외협력위원회: 성북구립미술관 김보라 관장

홍보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임연숙 전시팀장

사업위원회: 코리아나미술관 유승희 관장

\* 기타 협의회 발전을 위한 제언 및 역할 구성

## [부록 1] 협회현황

협회창립 : 2015. 10. 23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16. 3. 31.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제2016-105호)

설립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 협의체로서 미술관 진흥, 미술창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프로그램지원사업 전개 등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1. 서울시에 위치한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2. 미술창작 환경 조성
3. 미술교육사업
4. 민관협력 등 시각예술관련 사업 수행
5. 서울시 내 등록미술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6. 미술관 협력망 구축을 위한 국공립, 사립미술관 협의체 구성
7.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8. 학술세미나, 포럼 등 미술관 및 예술가와의 소통사업
9.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회원현황: 서울시 내 등록미술관 – 현재 22개관

OCI미술관, 검재정선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삼성미술관 LEEUM, 상원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성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세종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아트센터나비, 인덕대학교 아정미술관, 일민미술관, 자하미술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토탈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재)한원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세화미술관, 롯데뮤지엄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2길 20 2F

전화: 02-6367-7070

이메일: seoul.scm@gmail.com

웹페이지: www.seoulscm.com

## [부록 2]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정관

### (사)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정관

2022년 02월 22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ul Council of Art Museums(약칭 SCM)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미술관 협의체로서 미술관 진흥, 미술창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 프로그램지원사업 전개 등 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미술관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② 미술창작 환경 조성
- ③ 미술교육사업
- ④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 ⑤ 학술세미나 및 미술관과의 소통사업
- ⑥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미술관 관장 중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① 정회원: 서울특별시 내의 비영리목적의 미술관 관장
- ② 명예회원: 미술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 ③ 특별회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관련단체 및 기관의 대표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특별·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③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에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① 회장 1인, 부회장 1~2인, 이사 5인~10인(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1~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그 취임에 관하여서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과 사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임원이 임기 중 사임하고자 할 때는 사직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 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투표권제외)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다자간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계획의 승인
- ⑥ 기타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 ①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상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결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③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다자간 영상통화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의결권은 서면으로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
- ⑥ 임원의 임명사항
-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추대
-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의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 입회비 및 회비, 지원금, 보조금 및 출연금, 기타 수입금, 기부금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

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명예회장,고문 및 자문위원

제42조(명예회장)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3조(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4조(자문위원)

- 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미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제9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7조(업무보고)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의한 임원 임기 규정은 새로 선임된 임원 및 연임 임원부터 적용한다.

## 규 칙

제1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에 규정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문서관리, 재산 및 회계관리, 회원의 신상관리,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보수)

①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회비 및 회원가입 시 납부할 입회금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만원, 연회비는 본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제3조(금액의 조정) 제2조 회비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번호	안건	비고
기타	이사회 논의 안건	

**1) 서울숲 관련**

**2) 백상경제연구원 (서울경제) MOU**

**3) 사무국 인력 운영 방안**

- 재공고 및 추가모집
- 추천 인력 검토